

# 인터넷 파파라치 조심하세요

- 녹용의 효능효과 게재한 홈페이지 고발 기승 -

사슴농가가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중 녹용의 효능효과를 게재한 부분을 보상금을 노리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본회에 접수된 고발 사례만도 6건. 이들은 대부분 익명의 고발자에 의해 '홈페이지를 통한 과대광고 건'으로 해당 시군청에 고발되어 있다.

특히 고발을 당한 농가들이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고발자의 지역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어느 한 개인이 보상금을 노리고 사슴농가를 집중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때문에 고발을 당하는 농가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내산 생녹용은 축산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이를 홍보할 시에는 식품위생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허위 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2항에서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자에 따르면 녹용의 효능에 대해 옛 문헌 내용을 인용하고 문헌명을 표기하더라도 이 또한 위법 행위로 적발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식약청 담당자는 "국내산 생녹용 홍보 부문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밝히고 "축산물로 분류된 생녹용에 대해서 판매와 연계하여 의학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나 홍보는 위법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

다.

식품위생법에서는 허위 과대광고의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대광고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익명의 고발자가 보상금을 노리고 홈페이지를 갖춘 사슴농장들을 집중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제보받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 전국 임원·지회장·사무장에게 홈페이지를 갖춘 회원농가들이 고발당하지 않도록 녹용의 효능 부분을 잠정 중단해 줄 것을 안내했다.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파악된 홈페이지 개설 농가들을 대상으로 전화 통화를 실시,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이미 사슴농가 고발이 접수된 시군 위생계에는 공문을 발송, '홈페이지 운영 잠정 중단 등' 가급적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본회에서는 식약청 식품관리과에 공문을 발송, 허위 과대광고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본회는 유권해석이 나오는데로 이미 고발되어 있는 농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녹용의 효능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양육**